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,
한국건강가정진흥원 「채용규칙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
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
요청하면 해당 우리기관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
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우리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
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